

■ 판례 동향

형사 약식명령의 확정을
근거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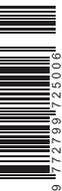
■ 품목분류 동향

FAN과 방열판이 결합된
CPU 냉각장치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서 만들고 미국서 소비? ‘북미 제조’로 바뀐다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 (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김재현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11월 18일(통권 제2107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아시아서 만들고 미국서 소비? '북미 제조'로 바뀐다

06 Weekly News

관세행정실무해설

- 14 관세행정안내
한·미 FTA 제200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해석
- 19 질의응답사례
한·중 FTA

판례동향

- 21 관세판례해설
형사 약식명령의 확정을 근거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품목분류동향

- 33 품목분류해설
FAN과 방열판이 결합된 CPU 냉각장치의 품목분류
- 39 세번 바로잡기
치과용 연마제

41 상식 밖의 상품학

중세시대 사치품 '향신료'

최신개정법령

44 총리령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9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외

아시아서 만들고 미국서 소비? '북미 제조'로 바뀐다

美 동부 및 캐나다·멕시코 국경 지역에 물류 인프라 확보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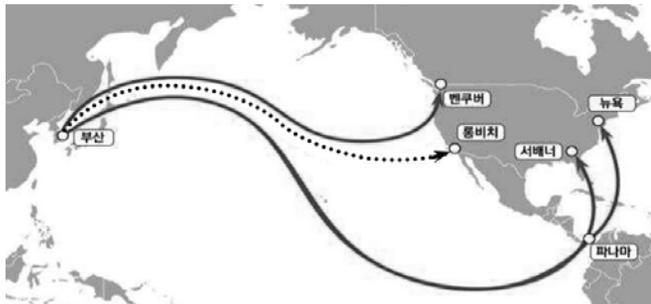
트럼프 2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미국 전체 항만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물류 인프라 사업은 철회되고 캐나다·멕시코 국경지역과 미국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월 11일 '트럼프 집권 2기 물류공급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미국 동남부 지역과 캐나다·멕시코 국경지역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한미물류공급망센터장은 “트럼프는 바이든의 30억 달러 규모의 물류인프라 사업(IRA 연계 친환경사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철도·도로 인프라가 낙후한 내륙보다 해안 쪽, 그리고 항만이 4 ~ 5개밖에 없는 서부보다 36개 항만이 있는 동부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AI 등 주요 핵심기술 제품의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수출입 물류공급망의 패턴도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센터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아시아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소비되는 패턴의 상당 부분이 북미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소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와 미국 무역 시 주로 미국 서부 항만을 이용해 왔는데 이제는 다변화될 것”이라며, 美 동부연안과 동남부 지역,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강화로 멕시코·캐나다 국경지역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미국 핵심 물류공급망의 현재와 미래 ●



가운데 점선이 현재, 실선이 미래 확대가 예상되는 물류공급망 노선(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과거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가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동했지만, 앞으로 몇 가지 산업에서는 한국의 중간재가 북미로 곧바로 건너가 역내에서 가공·조립을 거쳐 최종재가 되고 다수는 미국 내 소비되지만 일부는 해외로 수출되는 물류 흐름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에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도 탈중국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USMCA로 묶여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한국·대만 등 기존 경제동맹국을

중심으로 무역 확대와 지역 블록화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2018년 이후 강화되며 최근 對中 무역규모는 2021년 6,560억 달러, 2022년 6,900억 달러, 2023년 5,750억 달러로 감소했다. 美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에서 멕시코로 이동했으며, 최근 3년간 미국의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은 멕시코 7.5%, 중국 △5.4%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고병욱 연구위원은 11월 5일 'KMI 북미 물류동향을 통해 미국의 중국 견제와 對美 수출 우회로로서 멕시코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태평양 연안의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고 멕시코 국경의 비중이 2006년 대비 약 3%p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성우 센터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韓美 간 무역적자가 심한 탓에 관세 인상 가능성이 있다. USMCA의 멕시코나 캐나다를 우회수출 루트로 고려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USMCA가 트럼프 1기에 체결된 만큼 상대적으로 USMCA의 보편적 관세 적용 강도는 약할 수 있다는 것. “캐나다는 멕시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對美 흑자가 적고 물동량 또한 적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외는 북미 시장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제시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북미 공급망에 새롭게 진입하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북미시장에 특화된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로 공략한다면, 한국 항만이 빠르고 안정적인 물류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점으로 인식되고 환적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류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물류공급망 위원회를 설립해 부처 간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물류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그간 한국발 물류업무 수행에 익숙하고 현지 물류서비스 경험은 부족하기에 새로운 물류거점에 개별 기업 단위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같은 화주라도 생산지역과 물류경로가 다양해져 기업 차원에서 대응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기업들 간 또는 글로벌 물류기업과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 센터장은 북미 지역에 물리적인 물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작은 규모의 물류센터는 지원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몇 천억에서 몇 조에 이르는 대규모 항만이나 터미널 확보는 아직 실적이 없다.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나서서 항만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대한상외가 올해 4월 발표한 ‘미국 공급망 제편에 따른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만 터미널은 시애틀·타코마 일부에 불과하고 동부 지역엔 전무한 상황이다. 유통물류정책팀 관계자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선사들은 자국 선박을 자사 보유 항만터미널로 우선 접안시켜 화물을 처리하고 타국 선박들은 후순위로 미룬다. 터미널을 보유하지 못한 선사는 화물처리가 늦어져 수출기업은 위약금, 계약취소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변수는 있다. 트럼프 2기 정책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로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공급망과 물동량 자체가 美 동부와 캐나다, 멕시코 국경으로 이동하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 물류거점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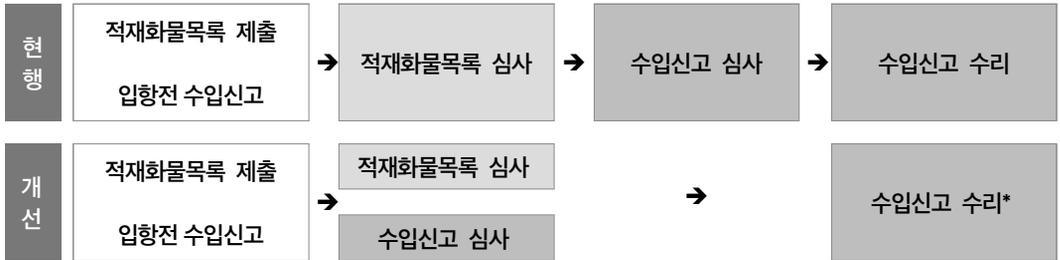
| 김성은 기자 |

“긴급자재 신속 통관” 적재화물목록 심사 이전에 수입신고 심사 가능

관세청,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 11월 13일부터 시행

반도체 등 긴급 수입 원부자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통관 지원을 위해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1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입항전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 도착 전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다.
 도입 배경에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으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화물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확인해 고위험·불법 물품을 선별하는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만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했다.
 제도 개선 전에는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 개청을 신청해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 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 단, 적재화물목록 심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하고 추가 검사 후 최종 판단

관세청은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내년부터 일본 수출 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 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를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이 작년 한 해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발급받은 기관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수출 규모로는 23억 달러 상당에 달했다.

美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에 韓 재지정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제외됐던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미국 재무부는 11월 14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었으나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교역촉진법상 요건은 ▲對美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흑자,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美달러 순매수의 3가지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경상흑자 2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재무부는 평가 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올해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하구현 기자 |

우리나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내년부터 유럽 시장서도 인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북유럽 EPD 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협력

내년부터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기업은 해외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12일 노르웨이 제품환경선언 인증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양국의 최초 상호인정 제품인 식기세척기(엘지전자), 인테리어필름(현대엘앤씨)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원료물질 취득, 제품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의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여러 환경성 정보 중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증 대상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 소비자에 대한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 및 서비스로 범위가 매우 넓다. 인증 기간은 3년으로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이번 협정으로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노르웨이 인증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돼 EU의 배터리법, 에코디자인법(디지털제품여권) 등 제품의 탄소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 과정에 대한 탄소배출량 공개 등 탄소발자국 보고 의무는 2026년 하반기에,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저장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디지털 인증서는 2027년에 시행 예정이다.

기술원은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내년 3월 본격적인 상호인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피디-노르웨이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인정 대상 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술원은 11일 스웨덴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기관인 인터내셔널 이피디(International EPD)와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 후 상호인정절차,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실무진 협의를 약 1년간 거치고 양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EPD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노르웨이와 상호인정협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자동차 ECU, 전기제어기vs자동조절기” 관세품목분류포럼서 논의

관세평가분류원은 11월 14일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관세품목 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진행했다. 관세품목분류포럼은 품목분류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도모하고자 2017년에 설립됐다.

세미나는 포럼의 손성수 회장과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로 시작됐다. ‘소매용 제품’ 구분의 실무상 어려움 등 품목분류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어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관세법인 에이원의 이소현 관세사가 발제한 ‘자동차 전기제어 유닛(ECU)을 중심으로 전기 제어기기(HS 제8537호)와 자동 조절기기(HS 제9032호)의 분류기준’을 주요 주제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쟁점사항을 토론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에 탑재된 부품의 기능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전자제어 유닛(ECU)은 차량 내에서 다양한 전자장치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핵심 장치로 수출입 기업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수 회장은 “품목분류가 잘못된 경우 최대 과거 5년까지 세액추징이 발생하므로 신규물품 수입 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전장부품과 같은 중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 혼란이 없도록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고 보니 몰카? IP카메라 해외 직구 제도 손 본다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해킹이 발생하며 사생활 유출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안 대책 강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과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IP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해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관·시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로 홈캠·CCTV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IP카메라는 최초 인터넷 접속 시 비밀번호 설정·변경 의무가 없어 해킹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IP카메라 보안성을 강화해 해킹·영상 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11월 해외 IP카메라를 분석해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해킹·영상유출 추이 분석 및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해외 직구 제도를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제품 설계·제조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해 비밀번호 최소 길이, 문자 혼합 배열 등 잘못 입력 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중요 민간시설은 TTA 보안인증을 받은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 김성은 기자 |

해수부, 베트남 북부 콜드체인 물류 유통 거점 마련 첫 삽

베트남 북부지역 콜드체인 물류의 안정적 유통 거점 마련을 위한 복합물류센터 공사가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베트남 하이퐁시 남딘부 항만의 딘부 깃 하이 경제특별구역에서 국내 기업이 건설하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센터 사업이 착공됐다고 밝혔다.

하이퐁시는 베트남 북부의 주요 항구 도시로 하이퐁시 동남부에 위치한 남딘부 산업단지는 항만 배후시설과 보세구역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착공된 물류센터가 상온(30%)과 냉온(70%) 창고를 모두 갖춘 37만 843㎡(11만 447평)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로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다수의 국내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입주를 계획 중인 국내 물류·유통업체 관계자는 “남딘부 복합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물류 비용 절감과 더불어 신선식품의 유통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래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해운물류 기술 실증 본격화

수출입 자율주행차의 자동 선적 및 하역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기술 시연회가 11월 14일 광양항에서 개최됐다.

통상 자동차운반선을 통해 이뤄지는 자동차 수출은 인력이 직접 자동차를 선적하고 있으나 운전대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라는 미래 모빌리티가 상용화될 경우 자동 선적과 하역 등 수출입을 위한 해운물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135억 원을 투자해 자율주행차량 자동 하역 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완전자율주행차의 자동 선적 및 하역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운반선의 내부 환경을 구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실증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위성항법신호(GPS)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자동차운반선 내에서 자율주행차량 주행 시 필요한 별도의 선내 통신 환경을 테스트베드에 구현해 고정밀 디지털지도와 최적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 자동 선적·하역 기술을 앞으로 2년 동안 실증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선복량 확보, 수출차 야적장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했다”며, “앞으로 완전자율주행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첨단 해상 운송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우리나라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금융위, 금감원·폴란드 금융감독청(KNF)과 MOU 체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이 은행감독 MOU를 체결, 양국 금융기업의 상호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1월 13일 폴란드 KNF의 야척 야스트로제브스키 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이날 한국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가 공동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은행산업 현황과 글로벌 전략 등을 주제로 '한·폴 금융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우리 은행들이 중견·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폴란드를 교두보 삼아 인근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EU 역내 시장에 K-금융 수출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위치, 우수한 노동력, 원가 경쟁력 등 이점을 갖춘 국가로, 1989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해 온 결과 2023년 기준 진출 기업수는 370개사, 누적 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교역 규모는 연 90억 달러에 달한다. 폴란드 진출 기업의 현지 금융수요에 부응하고자 최근 한국 금융권의 폴란드 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양국 간 방산·원전·인프라 및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돼 앞으로 실물·금융경제 부문의 상호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2024년 6월 말 기준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3개 은행이 폴란드에 진출해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현지법인(기업은행), 지점(우리은행), 사무소(수출입은행) 등 폴란드 진출 및 영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정 탈퇴 공언한 트럼프... 中 녹색기술시장서 우위 차지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또다시 탈퇴할 경우 중국이 국제 기후행동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미국이 UN에 공식 탈퇴 요청을 할 경우, 중국이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빠르게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기술 투자에 나섰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조나단 피싱 기후 특사는 “미국의 탈퇴로 인해 중국이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등 주요 녹색기술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중국은 거의 모든 국가와 무역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미국의 탈퇴는 오히려 중국의 글로벌 기후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파리협정을 재탈퇴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은 기자 |

K-SURE, 디지털 혁신으로 무역 사고 예방 이끈다

해킹, 명의도용 등 빅데이터 기반 무역사기 사전 진단 서비스 신규 도입

무역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수출을 돕기 위한 무역보험 빅데이터 플랫폼(K-sight)이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작년 11월 론칭한 K-sight에 ‘안심거래 자가진단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디지털 무역보험 플랫폼인 사이버영업점을 ‘K-SURE ON’으로 리뉴얼 오픈했다고 밝혔다.

K-SURE가 30여 년에 걸쳐 축적된 무역보험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론칭한 K-sight에서는 국가, 산업, 기업 신용정보, 대금결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는 물론, 수출기업에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아주는 ‘맞춤형 무역보험 추천’,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숨은 보험금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신규 도입된 안심거래 자가진단 서비스로 수출기업이 무역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바이어에 대해 계약체결 경위, 바이어 주소, 결제 조건 등 주요 정보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된 피해사례와 유사성을 AI가 분석해 위험도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K-SURE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해킹, 제3자 명의도용 등의 무역사기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심거래 자가진단을 사용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바이어가 경제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제재 대상자’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 제조기업인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경제제재의 경우 복잡하고, 제재대상에 변동이 잦으나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어 불안감이 있었다”며, “K-sight 덕분에 제재위반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덜게 됐고, 이번에 새로 도입된 무역사기 자가진단 서비스도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K-SURE는 對고객 온라인 채널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디지털 무역보험 플랫폼 ‘K-SURE ON’도 리뉴얼 오픈했다.

K-SURE ON은 약 6만 개 회원사가 보험 청약 등 무역보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보험 플랫폼으로, 24시간 고객의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고 더욱 고객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을 제공한다는 ‘ON(溫)’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뉴얼된 K-SURE ON은 고객 편의 중심으로 메뉴 체계를 전면 개편했으며 간편인증 로그인 방식을 추가하는 등 빠르고 편리한 무역보험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장영진 K-SURE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우리 기업들의 안전한 해외거래를 돕겠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청·특허청, 위조 상품 단속 협력 MOU 체결

관세청과 특허청은 11월 15일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 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기업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앞으로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한·카타르 수교 50주년 기념 무역·투자 포럼' 개최

한국무역협회와 주한카타르대사관이 공동으로 11월 11일 '한·카타르 수교 50주년 기념 무역·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1974년 수교 당시 4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규모는 2023년 1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한·카타르 경제협력 현황' 발표를 맡은 송상현 단국대 GCC국가연구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카타르에 철강·중공업 제품·승용차를 주로 수출하고, 카타르로부터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를 주로 수입한다.

칼리드 알하마르 주한카타르대사는 카타르의 경제성장과 사회 개발을 위한 중장기 개발 계획인 '국가비전 2030'의 다양한 사업에 한국 기업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카타르공공사업청(Ashghal)의 바드르 다르위시 이사는 "향후 4년간 1,160억 리얄, 한화 약 4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245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설, 디자인, 시스템, 기자재 공급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세관, 'Three-Track 관세환급 지원' 시행

평택세관은 중소 수출기업이 관세환급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주간 'Three-Track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별도 신청 없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증명 P/L 발급업체로 지정되면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증명서를 관계 서류 제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평택세관은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 분석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인력, 정보 부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을 선정해 미환급금과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안내문 발송,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상담을 제공해 업체가 실질적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미 FTA 제200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해석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미 FTA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스 성분이 농축액인 경우 농축액 기준인지, 원액 기준인지 2.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할 때 원재료 기준인지, 물이 첨가된 상품 기준인지
	<p>한·미 FTA 제200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p> <p>질문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p> <p>나. 제20류 내의 다른 소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주스 성분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 용량의 6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p>
답변	제200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주스 성분이 '농축액'인 경우에는 농축하기 전의 '원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피는 재료가 아닌 상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원산지 상품 요건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상품 요건을 의미하는 것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충족됐는지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품무역에 관한 FTA 목적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협정상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FTA 실무상 원산지 상품 요건에 관한 부분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기준(General Rules)이 존재한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 협정 체계상 '원산지 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해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섬유를 제외한 원산지규정을 제6장에 두고 부속서 가 2부에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두는 이유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원산지 물품에 대한 기준이

단순히 해당 수출국에서 제조되고 생산돼야 한다는 추상적인 요건만 있다면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의견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각 협정에서는 물품의 HS Code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협정, 그리고 물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등을 단순히 적용하는 등 그 해석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외에 특정 조건을 추가해 원산지 결정기준의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번 호의 주제인 한·미 FTA에서 제2009.90호 또한 그렇다. 제200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① 크렌베리 혼합주스에 대해서는 따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② 기타의 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다만 다음 내용에서는 ② 기타의 기준만 다루도록 한다.

협정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2.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제20류 내의 다른 소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주스 성분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 (single strength)상태로 그 물품의 전 용량의 6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한·미 FTA	제2009.90호	A change to subheading 2009.90 from any other chapter; A change to any other good of subheading 2009.90 from any other subheading within Chapter 2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provided that a single juice ingredient, or juice ingredients from a single non-Party, constitute in single strength form not more than 60 percent by volume of the good.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상 제2009.90호의 기타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선택기준으로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용량(Volume, 부피) 요건이 존재한다. 용량 요건에 관한 부분은 단일 주스 성분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 (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 용량의 6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제200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류로부터의 세번변경이 없어도 제20류 내의 다른 소호로부터의 세번변경이 있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며, 다만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서 규정을 추가로 적용해 역외산 주스 성분(들)의 부피가 원액기준으로 상품(Good) 부피의 60%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다.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혼합주스’를 생산할 때 고려될 수 있다고 보인다.

3. 제2009호의 주스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거나 기계적으로 개봉(開封)하여 얻는다 … <중략> …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진공에서 가열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냉각(동결건조)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 … <중략> … 같은 형태나 다른 형태의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한다. … <중략> … 그러나 정상의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가 보통 주스에 함유하는 양보다 많은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것(탄산가스를 함유한 과실·견과류 주스)과 레모네이드와 과실·견과류 주스로 향미(香味)를 준 탄산수는 제외한다(제2202호)”고 설명하고 있다.

4. 질문 & 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해당 질문 & 답변 사례는 제2009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서 조항인 “다만, 단일 주스 성분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 용량의 6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규정이 ① 주스 성분이 농축액인 경우 농축액 기준인지 원액 기준인지, ②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할 때 원재료 기준인지, 물이 첨가된 상품 기준인지에 대한 것이다.

일단 해당 질문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해석상 수출(수입)물품이 주스 원액이 아닌 농축액으로 이뤄진 주스가 수출(수입)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용량(부피) 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60%가 수출(수입)물품인 농축액의 기준으로 용량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액의 기준으로 산정할지에 대한 문제다.

(2) 질문 & 해석에 대한 답변

관세청에서는 제200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주스 성분이 '농축액'인 경우에는 농축하기 전의 '원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피는 재료가 아닌 상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농축액(Concentrate)은 주스 용액에서 수분을 제거한 것으로 원액의 부피보다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한·미 FTA에서는 '농축주스'인 경우 '농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원액기준'으로 정한 것을 '농축액'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농축주스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2106.90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는 다음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된다.

협정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	제2106.90호	1.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 주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A change to concentrated juice of any single fruit or vegetable fortified with vitamins or minerals of subheading 2106.90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08.05 or 20.09 or subheading 2202.90.

이에 반해 제200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는 단일 주스 성분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인 상황에서 용량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농축액이 아닌 원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volume of the good'이라는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재료(material)의 부피'로 규정하지 않고 상품(good)의 부피로 규정돼 있으므로 상품의 혼합주스의 부피가 기준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결국 농축혼합주스가 수출(수입)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농축혼합주스의 부피를 기준으로 전 용량의 60% 이하인지를 확인하는데, 이 기준은 원액(single strength) 상태인 것이다.

물품에 대한 전 용량 산정상 농축액을 기준으로 할지 원액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유사한 사례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사례가 존재한다(HQ H029957). 해당 사례에서는 제2106.90.54호에 해당하는 'Nutrifruit Ambient Concentrated Orange' 제품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이 제품은 물·미국산(플로리다) 오렌지 농축액(BRIX 65)·중국산 사과 농축액(BRIX 70)·브라질산 오렌지 농축액(BRIX 65)·발렌시아 오일·오렌지 향·베타카로틴 및 방부제

로 이뤄진 제품으로 중국산 사과 농축액 및 브라질산 오렌지 농축액에 대한 용량(부피)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미국산 오렌지 농축액은 누적기준이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¹⁾에서는 이번 호의 사례와 동일하게 단일 주스 성분 또는 NAFTA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 용량의 6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기준이 동일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by volume of the good(그 물품의 전 용량)'의 의미에 대한 미국의 해석이 존재한다.

문의사항은 그 물품의 전 용량이라는 규정이 농축주스를 원액으로 조정할 때의 조정된 상품 용량(부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것인데, 이번 사례에서는 중국산 사과주스의 용량(부피)은 13%, 브라질산 오렌지주스의 용량(부피)은 145%가 되는 반면 농축주스를 원액으로 조정한 후의 상품 부피를 반영하면, 중국산 사과주스의 부피는 27.4%, 브라질산 오렌지주스의 부피는 29%가 됐다. 이에 따라 원액 상태에서는 용량(부피)을 고려한다면 60% 이하가 되기 때문에 NA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농무부)에서는 2008년 6월 2일자로 관련 언어에 대한 해석을 담은 서한을 제출했는데, 농축주스를 원액으로 조정할 때의 조정된 상품 용량(부피)을 사용하는 규칙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혼합 주스 제조업체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이며, 농축액을 통한 용량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사례와 같이 성분의 총량이 100%를 훨씬 초과하는 비논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농축주스를 원액으로 조정할 때의 조정된 상품 용량(부피)을 사용하는 규칙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봤다.

원산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단서기준이 적용되는 특별한 기준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분석이 쉽지 않은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협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원산지 충족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 A change to tariff item 2106.90.54 from any other subheading within chapter 21, heading 2009 or tariff item 2202.90.37,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provided that a single juice ingredient, or juice ingredients from one non-party to the NAFTA, constitute in single strength form no more than 60 percent by volume of the good('Single strength rule').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FTA / 한·중 FTA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6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직구했습니다. 한·중 FTA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데, 사전협정관세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 소액물품이며, 이 경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직구 시 개인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통상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직접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통관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품목분류 / 반려견 샴푸의 HS Code

반려견용 샴푸는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문의하신 물품이 ‘면도용 제모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제3307.90-9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3307호 해설서에 “(V)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중략> … (6) 동물용 화장품[예 : 개(犬)용의 샴푸·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라고 예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제3307호 용어 및 해설서

- 33.07 -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항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3307.10 - 면도용 제품류
- 3307.20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 3307.30 -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 3307.41 -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 3307.49 - 기타
- 3307.90 - 기타

원산지 / 원산지 표시의 면제

제조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부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한가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중략> ...
-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질적 변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 따라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단순가공 제외). 따라서 수입물품(부품) 및 실수요자(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제조공정도 등을 통해 해당 수입물품이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인 점을 입증해야 하며, 납품계약서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처럼 제조업체에 납품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수입물품이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약식명령의 확정을 근거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이정완 |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I. 처분의 경위 및 사건 경과

1. 선행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소재 ○○○○ FOOD CO.(이하 ‘○○식품’이라 한다) 또는 ○○○○ IMPORT AND EXPORT CO.(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명강 및 소강을 수입해 피고 ○○세관장(이하 ‘피고 1’이라 한다)에게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했고,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2’라 하고, 원고 주식회사 ○○은 ‘원고 1’이라 한다)은 위와 별도로 ○○식품으로부터 소강을 수입해 피고 ○○세관장(이하 ‘피고 2’라 한다)에게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했다(이하 원고들이 수입한 위 명강 및 소강을 총칭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결과 이 사건 물품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요구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가 객관성이 떨어지는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 관세를 부과처분했다(이하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8. 4. 17.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2017구합64669), 위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돼 확정됐다(수원고등법원 2018누44915, 대법원 2018두63655. 이하 확정된 위 판결 중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2. 관련 행정판결의 확정

가. 주식회사 ○○농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은 2014 ~ 2015년경 ○○식품으로부터 명강 및 소강을 수입했고, 피고 2는 이에 대해서도 위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농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

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7. 27. 관세 △△△△원을, 2015. 9. 18. 관세 △△△△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나. ○○농산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법원은 2017.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6구합1367).

다. 이에 ○○농산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9. 19. “○○농산이 10년 이상을 거래해 온 수출자로 하여금 장래에 생산될 생강에 관해 다른 중간 거래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현지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계약으로 생산된 생강을 대량포괄계약하는 방법을 통해 생강을 수확시기로부터 약 1년 전에 저렴하게 대량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이 관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한 피고 2의 상고가 2019. 1. 31. 심리불속행 기각돼(대법원 2018두60137) 2019. 2. 9. 확정됐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3.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8. 30. ○○식품의 사장 ○○○(이하 ‘○○식품 사장’이라 한다)에 대해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은 위증죄로 벌금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이후 2019. 10. 1. 확정됐다(2019고약12897, 이하 확정된 약식명령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 관련 형사판결 ●

피고인은 중국에서 ‘○○식품’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국내 등으로 생강(소강 및 대강) 등 농산물의 가공 및 수출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1별관 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누84503호 ○○농산과 피고 2 사이의 관세경정처분취소소송에서 ○○농산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농산 대리인의 “입항일자 기준으로 2014. 12. 6.부터 2015. 4. 7.까지 10회에 걸쳐 ○○농산과 소강 및 대강을 여기에 기재한 톤당 금액으로 거래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한국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농산 외에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한 것도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는 ○○농산 1곳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원고 1과도 생강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4. 6. 10.부터 2015. 8. 25.까지 생강을 국내로 수입하였으므로 위 ○○농산과 거래할 무렵 다른 업체와도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사건 경과

가. 원고들은 2019. 10. 29. 관련 행정판결 및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 2는 2019. 12. 18., 피고 1은 2019. 12. 20.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농산과 동일한) 사전일괄구매계약에 따른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이 없는 형사판결에 근거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2020. 3. 5.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5. 관련 행정판결 및 형사판결이 舊 「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각 조세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

다. 원고들은 2020. 12. 29.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2023. 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라. 원고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2023. 2. 8.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3. 8. 이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4. 7. 11.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¹⁾.

II. 관계 법령

■ 舊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1)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구합7688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3. 8. 선고 2023누10934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두38810 판결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舊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② 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Ⅲ. 대상 판결의 요지

1. 제1심 판결

제1심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과 관련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 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관련된 법리 등에 비춰 볼 때 관련 행정판결 및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으며, 그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권리에 기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상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는 관련 행정판결 및 형사판결과 무관한 것이다.

또한, 관련 행정판결 확정일인 2019. 2. 9.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선행판결 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한 2019. 2. 15.을 기준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2개월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성이 없다.

○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행정판결 및 형사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적으로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관련 행정판결로 이 사건 물품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낮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인정되었고, 관련 형사판결로 이 사건 물품과 ○○농산의 수입물품이 같은 방식으로 수입된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舊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舊 「관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관련 형사판결은 ○○식품 사장의 위증죄에 관한 것으로, 위증이 된 내용은 '한국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농산 외에 원고 1과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농산 1곳과만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은 원고들이 ○○식품 및 ○○상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위증의 내용과 같이 ○○식품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고 ○○상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각 선행처분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이 아니다.

나. 게다가 관련 형사판결은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전제가 된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각 선행처분 관련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한 바도 없으므로, 애초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

다. 원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의 취지가 ○○식품이 ○○농산 외에도 사전일괄구매계약에 따라 생강을 원고들에게도 수출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舊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같은 조 제2항의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그 사유도 판결 내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의 인정 여부는 엄격하게 봄이 상당하다.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의 문언은 '사전일괄구매계약에 대한 내용은 위증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는 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판결로 볼 수도 없다.

라. 관련 행정판결에 관하여 보더라도, 관련 행정판결의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농산으로, 이 또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들과 ○○식품 및 ○○상사 간의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아니므로, 이 역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2.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판단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관련 행정사건의 쟁점 및 경과,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등을 종합하면, 관련 형사판결을 통하여 원고 1과 ○○식품이 '사전일괄구매계약'이라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명된다.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舊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가. 舊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은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를 납세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형사판결은 ○○식품 사장의 위증죄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은 '한국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산 외 원고 1과도 거래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무렵 ○○농산 1곳과만 거래하였다'는 것이다.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은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 수사결과보고의 내용을 고려하면,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식품이 원고 1과 사전일괄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 진술에 의존한 일부 수사기록만으로 원고 1이 ○○식품과 사전일괄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검찰 수사를 거친 후 위증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에 대한 공소사실 및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사전일괄구매계약'이라는 문언이 전혀 없다.

IV. 판례 해설

1. 이 사건의 쟁점 정리

원고들은 중국 ○○상사와 ○○식품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결과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합리적 방법에 따른 가격을 기초로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적용해 원고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선행처분을 했으며, 원고들은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중국 ○○식품으로부터 수입한 생강의 과세가격과 관련한 피고 2와 ○○농산 간 행정소송에서 관련 행정판결은 사전 대량포괄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농산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 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수출자	수입시기	수입자	행정소송	세관
○○상사	2015년	원고1, 원고2	이 사건 선행판결 (2019. 3. 15. 기각)	피고1
	2014 ~ 2015년	원고1, 원고2		
○○식품	2014년	원고2	관련 행정판결 (2019. 2. 9. 인용)	피고2
	2014 ~ 2015년	○○농산		

참고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과정에서 유사물품 등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던 이유로 대량포괄계약을 주장하는 수입자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관세청이 작성한 중국 현지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대량포괄계약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도 사전 일괄계약은 물량 확보의 의미밖에 없으며 구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²⁾³⁾는 점에서 사전 대량포괄계약에 따른 거래가격을 인정한 관련 행정판결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식품 사장은 ○○농산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관련 행정판결과 이때의 약식명령에 의해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됐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했다.

원고들 주장은 관련 형사판결로 인해 이 사건 물품도 사전 일괄구매계약의 형태로 거래된 사실이 증명되고, 그렇다면 ○○농산이 수입한 생강과 이 사건 물품은 유사물품 관계에 있으며, 관련 행정판결로 인해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과세가격보다 낮은 ○○농산이 수입한 생강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해당 거래가격을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관련 형사판결이 舊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의 ‘판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실질적인 요건으로서 그 판결에 의해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사전 일괄구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확정됐는지 여부에 있다.

2) 광주고등법원 2015. 8. 24. 선고 2015누412 판결 : 중국에서는 사전 계약에 따른 할인을 하지 않고 매매 당시의 시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최초 거래나 단골거래에 따른 할인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연 단위 일괄계약을 하더라도 공급량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은 거래 당시의 시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 <후략>

3) 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50041 판결 : 앞서 본 관세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연 단위 일괄계약을 하더라도 사전 계약에 대한 할인이 없으며** 대한민국 수입자의 신용도가 낮아서 대부분 거래금액의 30% 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가공 및 포장 후 선적하기 전에 나머지 70%를 잔금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수확시기의 작황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여** 원고들이 특별히 이 사건 생강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후략>

2. 형사판결은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는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신고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관세법」 제38조).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과세가격 내지 품목분류 오류 등의 사유로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정 내지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관세법」 제38조의2, 제38조의3).

한편,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은 조세채권·채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 납부했다라도 위 기간이 경과하면 신고납부세액 그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돼 과다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관세법」은 2011. 12. 31. 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신설했다(「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내국세의 경우 이보다 훨씬 앞선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신설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내용은 경정청구 기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관세법」과 다르지 않다⁴⁾.

그리고 이 「관세법」 규정의 위임을 받은 舊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그 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범위와 관련해 학계 다수의 입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재판 과정에서 투명하게 다뤄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소송 사건의 판결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 사건의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에 대한 다툼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의 판결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⁵⁾.

4) 「국세기본법」은 처음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하였다가 2000. 12. 29.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했고, 2015. 12. 15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5) 김두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소송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범위’, 〈조세와 법〉 제8권 제2호,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2015, 제25면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舊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舊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⁶⁾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서 정한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판결에 대한 부정설 입장의 논거는 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않으며, ③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해,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 대상으로 해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설사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형사소송절차라고 하더라도 과세절차와는 그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돼 서로 상이하고, ④ 형사소송절차에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해 항변, 재항변 등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통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도 않으며, ⑤ 더욱이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⁷⁾.

그러나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과세요건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 내용이 형사판결에 의해 명백히 확정된다면 민사판결 등과의 목적 내지 절차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법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납세의무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4두5514 판결⁸⁾을 보더라도 법원에서 형사판결

6)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7) 강석규, <조세법 쟁론(제8판)> 삼일인포마인, 2024, 제358면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 판결의 경우 이 사건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 대상으로서 관련 형사판결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선행처분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종합해 보면 대법원 2018두61888 판결과 마찬가지로 형사판결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설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사실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증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한 판례에 따르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⁹⁾,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며¹⁰⁾, 증언 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¹¹⁾.

이 사건에서 ○○식품 사장은 ○○농산과 피고 2 사이의 행정소송 사건의 ○○농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¹²⁾한 다음 ○○농산과 거래할 무렵 원고 1과도 거래를 하고 있었음에도 재판장에게 ○○농산 외에 다른 업체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했다. 그리고 ○○식품 사장은 증인신문에 앞서 선서를 한 뒤 위증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됐고 그에 관한 약식명령은 확정됐다.

8)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판결 :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후략>

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1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1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12) 증인은 재판장의 신문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힌 선서서에 따른 선서의 의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319조, 제321조).

여기서 확정된 약식명령을 형사판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규정을 통해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검사는 범인, 범죄사실 등을 수사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사소송 절차를 공소의 제기라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8조¹³⁾ 및 제449조¹⁴⁾ 규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공판 절차 없이 서면의 심리만으로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 등이 기재된 약식명령의 고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51~453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그렇다면 ○○식품 사장의 위증죄에 관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됐고,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관련 형사판결은 형식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논의 대상인 판결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관련 형사판결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내지 세액 자체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식품 사장의 위증에 관한 범죄사실 등 관련 형사판결을 통해서는 ○○식품이 ○○농산 및 원고 1과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원고들이 ○○식품과 사전 일괄구매계약을 해 이 사건 물품을 거래했다거나 ○○농산이 수입한 생강과 이 사건 물품이 서로 유사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관련 형사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사실을 근거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대상 판결은 정당하다.

V. 맺는 말

경정청구는 신고납부·보정신청·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감액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 증액을 신청하는 보정·수정신고 절차에 대응된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세액 등의 감액 사유가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고, 당초 세액을 유지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상당히 불합리해 납세의무자

13) 「형사소송법」 제448조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4)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과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에게 별도로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관세법」은 국가정책 등 목적으로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기간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다소 짧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상 판결은 형사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8두61888 판결 등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이 사건의 전심인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과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본안 심리를 통해 실체적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 형사판결은 납세의무와 무관한 위증에 관한 것이고 위증의 내용도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전제가 된 사법상 거래의 효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¹⁵⁾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추가¹⁶⁾했다.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더라도 「관세법」도 조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내국세를 함께 부과한다는 점에서 상이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직접적인 소송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서의 판결에 행정소송 판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행정심판의 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확대 입법화한 「국세기본법」을 무조건 따르기에 앞서 그 실효성과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15)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16)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FAN과 방열판이 결합된 CPU 냉각장치의 품목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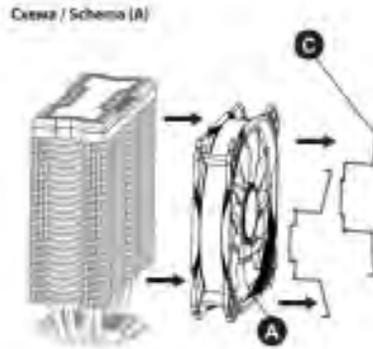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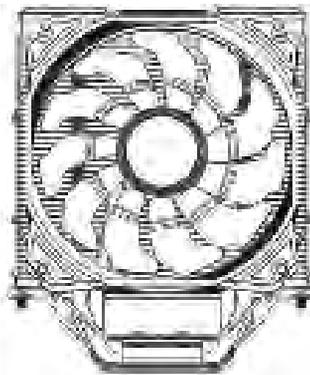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1. 제73차 및 제74차 WCO HS위원회의 논의

세계관세기구(WCO)의 HS위원회는 제73차(2024. 3.) 및 제74차(2024. 9.) 회기에서 팬이 결합된 CPU 냉각장치의 품목분류를 검토했다.

■ 물품 설명

- Fan, 방열판(heatsink), RGB 조명, 팬 고정용 브래킷 등으로 구성된 물품
- 팬은 특수한 브래킷을 이용해 방열판에 일체로 결합되도록 설계
- 방열판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됐으며, CPU와 접촉하는 베이스를 중심으로 표면적을 확대시키기 위한 다수의 핀(fin)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표면에 세라믹 입자가 포함된 코팅 재료로 도포됐고,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직경 6mm의 구리 방열 파이프가 형성돼 있음
-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에 접촉·고정돼 프로세서의 열을 제거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설계·제작된 물품
- CPU에서 발생한 열은 CPU와 접촉한 방열판의 베이스와 히트파이프를 통해 다수의 fin에 흡수되고 팬(fan)에서 방출되는 바람에 의해 분산·제거됨



제73차 HS위원회는 이 물품을 제847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414호의 팬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의했고, 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20 : 19)로 제8414호에 분류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미국과 EU에서 유보요청을 해 제74차 회기에서 다시 논의됐다.

이 물품의 HS위원회 논의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한 그간의 품목분류 쟁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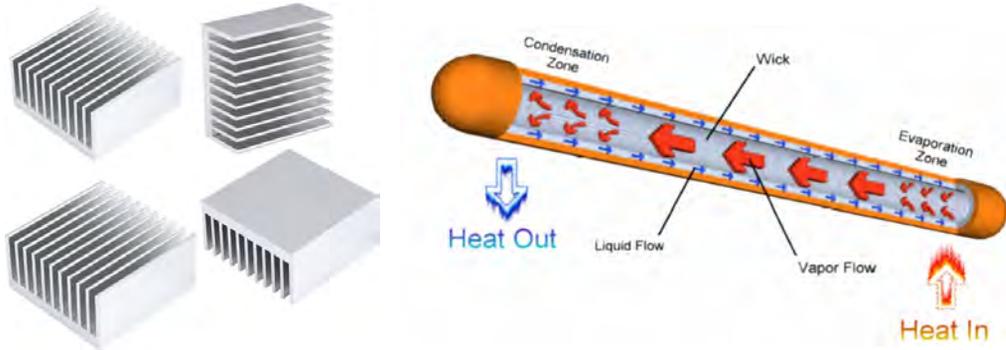
2. 기계적 작동부가 없는 비금속제 냉각장치의 품목분류

가. CPU용 방열판(heatsink)의 일반적 구조

‘Heatsink’란 말 그대로 열(heat)이 모이는(sink) 부품을 뜻하며, 열의 전도와 복사에 특화된 재질과 구조를 갖고 있어 열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으로부터 열을 빼앗아 주변으로 방출하는 냉각장치다. 주로 기계나 전자부품에서 발생하는 작동열을 모아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매질(공기, 물, 기름 등)로 방출하는 열교환기의 일종이다¹⁾.

주로 가볍고 열전도율이 뛰어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열원으로부터 발생한 열을 히트싱크에 골고루 전달해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 열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최대한 넓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다수의 fin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보통이다.

● Heatsink의 일반적 형상(좌), Heat pipe 구조 및 작동 원리(우) ●



Heatsink의 재질적 특성으로 열을 이동 및 냉각시키는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in 구조로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넓혀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냉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HS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물품의 Heatsink에는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리제의 Heat pipe(히트 파이프)가 형성돼 있다. 히트 파이프란 밀폐된 관 모양의 물품으로 내부에는 소량의 냉매가 들어있다. 히트 파이프의 내부 벽면은 모세관 현상을 유도하는 촘촘한 스펀지 또는 핀 구조가 형성돼 있고 진공 상태의 관 속에 들어있는 소량의 냉매는 열의 전달에 따라 기화되거나 액화되면서 파이프 내부의 공간을 순환하며 열을 이동시킨다.

1) 출처 : 나무위키

나. 기계적 작동부가 없는 비금속제 Cooler의 품목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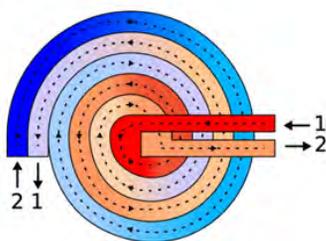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 등이 분류된다.

제8419호에 해당하는 기기에서의 냉각은 냉매를 순환시키면서 냉매의 기화, 압축, 응축의 적극적 순환사이클을 일으키고 기화에 따른 잠열을 흡수에 의해 저온을 발생시키는 제8418호의 냉각기와는 크게 다르다(제8418호에 해당하는 기기는 제8419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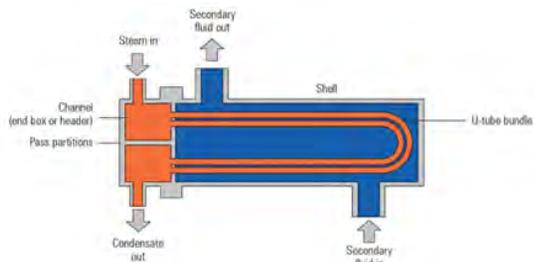
이 호의 냉각장치는 적극적이고 기계적인 냉각 메커니즘 없이 단순한 Fan의 작용, 대류, 외기의 순환, 열교환 또는 자연적인 방식에 의해 온도 변화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이 호에 해당하는 냉각용 기기는 적당한 냉각장치가 붙은 용기나 조(槽)의 형태이거나 재료를 순환·저장할 수 있는 대형 시설인 경우가 많다.

제8419호에 포함되는 가열·냉각용 기기 그룹에는 열교환기(Heat exchanger)가 포함된다. 제8419호에서 의미하는 열교환기는 단순한 가열이나 냉각장치를 뜻하지 않고, 두 종류의 유체(고온의 유체와 저온의 유체)가 서로 순환하는 동선을 공유하면서 얇은 금속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나면서(섞이지는 않는다) 뜨거운 유체는 열을 뺏겨 서서히 식으면서 빠져나가고 차가운 유체는 열을 얻어 서서히 가열되면서 빠져나가는 구조의 장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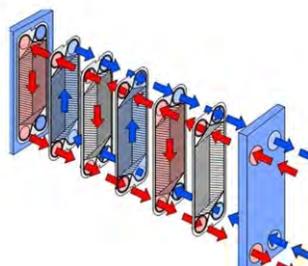
● 열교환기의 일반적 형태 ●



동심원관형



튜브 내장 챔버형



평행조절판형

업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Heatsink나 Heat pipe를 포함해 열의 이동을 통해 온도가 변하는 단순한 구조의 냉각 또는 가열장치를 넓은 의미에서 열교환기로 보는 경향도 있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8419호의 용어와 맥락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라디에이터를 포함한 정지식의 비금속제 Cooler類를 제8419호에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미 과거 HS위원회에서 비금속제 라디에이터를 제8419호가 아닌 기계 부분품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제8419호 부분은 배제하도록 하겠다²⁾.

CPU 쿨러나 라디에이터와 같이 특정한 기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을 단순히 재질 세번으로 분류하는 것도 논리적인 근거가 약하므로 이러한 물품은 대체로 그 용도에 따라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전기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Fan과 Heatsink가 결합된 Cooler의 품목분류

최근의 자동자료처리기계, 특히 비디오게임 전용의 자료처리기계에서 CPU 쿨러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CPU의 속도와 발열량이 높아진 반면, 집적도의 증가로 표면의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어 열의 제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Heatsink만으로는 냉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fan을 장착해 열의 발산 속도를 높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CPU의 발열면에 Heatsink의 base가 접촉돼 Heat pipe를 통해 열을 fin 부분으로 이동시키고 fin의 주위에 fan으로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켜 열을 발산하는 것이다.

- Heatsink, Heat pipe와 Fan이 결합된 쿨러 ●



2) <주간관세무역정보> 제1757호, 1759호, 1761호에 실린 'HS 코드 제8419호의 범위와 비금속제 Cooler類의 품목분류' 참조

제74차 HS위원회는 미국과 EU의 유보요청에 따라 이 물품의 품목분류를 다시 논의했다. Heat pipe와 fin으로 구성된 Heatsink(비금속제 Cooler) 부분은 제8473호에 해당하고 모터가 결합된 fan은 제8414호에 분류될 것이다.

결국은 CPU 냉각에 있어 비금속제 쿨러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fan의 역할이 더 큰 것인지에 따라 분류의견이 갈릴 수 있다. 기계적인 구조의 복잡함, 냉각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fan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반면, CPU의 냉각을 위해 Heatsink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되지만, fan은 경우에 따라 결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Heatsink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Heatsink와 fan이 결합된 물품을 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제8414호에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제74차 위원회에서는 투표 결과 35 : 12로 쟁점물품을 제8473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4. 남아 있는 쟁점

제74차 HS위원회는 쟁점물품을 제8473.30호에 분류하면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와 제6호를 적용했다. 위원회에서는 분류근거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 주장도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물품은 제8473호에 해당하는 비금속제 Cooler 부분과 제8414호에 해당하는 fan 부분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것으로 제16부 주 제3호의 맥락에 따른 복합기기로 보거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복합물품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즉, 전체 구성상 fan보다는 Heatsink 부분이 더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제8473호에 분류한 것이라면 주기능 또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했을 것으로 본다.

이 안건은 제73차와 제74차 회기에서 두 차례 결정된 건으로 아직 한 번의 유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74차 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기존의 위원회 사례를 변경할지 아니면 제75차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유보요청할지 변수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CPU 쿨러 혹은 프로세서 쿨러를 부분품으로 본다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다른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쿨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혹은 다양한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쿨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의 문제다. 일례로 우리나라(관세평가분류원)에서

는 특정 모델의 LCD TV의 메인보드에 장착돼 IC의 냉각을 위해 사용되는 Heat pipe 모듈을 제8419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그밖에 어떤 종류의 쿨러는 펌프 등 추가적인 기계를 갖추고 있어, 내부의 유체를 적극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 컴퓨터 CPU용 수냉식 Cooler ●



예를 들면 위 그림처럼 고사양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CPU의 과열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부속품으로 튜브와 펌프, 팬(fan), 방열판, 냉매(coolant) 및 조립용 부품이 함께 제시된 형태가 있다. 기능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물품은 튜브 내부를 순환하는 유체(냉매) 자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컴퓨터의 CPU에 방열판을 결합하고 방열판 주위로 튜브를 통해 냉매를 순환시킴으로써 CPU 자체를 냉각시킬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명백하게 제8419호의 기능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을 적용하기 전에 가목을 적용해 제8419호에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치과용 연마제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치의학의 역사는 인류 발생과 동시에 시작됐다. 치의학은 일반 의학과는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외과와 의학(내과)은 밀접한 관계였다. 하지만 르네상스를 지나 18세기까지 서유럽에서 내과는 교회의 사제가 맡는 전문 직업이었고, 외과는 이발사 또는 이발외과의가 맡았다. 요로결석을 절제하며, 농양에 대한 배농, 사혈, 발치 등의 시술을 했다. 독일에서는 이발외과의가 목욕탕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부가적으로 관장을 하거나 치아를 뽑아주기도 했다.

르네상스 시대에 발달하기 시작한 해부학과 생리학 등에 힘입어 그동안 교회로부터 천시받던 외과가 점차 내과적 질병을 설명할 수 있게 되자, 본래 뿌리가 다르던 외과와 내과가 점차 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간 반면, 치과는 그대로 남아 독립적인 길을 걸었다. 다시 말하면 중세까지는 의과와 치과가 구분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과와 외과가 구분되고 외과에서 다시 치과가 구분된 것이다.

한국은 한의학과 민간요법을 이용해 구강병을 치료해 오다가 1876년 개항 이후 미국을 통해 근대 치과가 도입됐다. 1893년 일본인 치과의사 노다 오지가 우리나라에 건너와 인천과 서울에 치과를 개업했다. 그후 치과 병원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세 번정정 이유] 본 물품은 갈색계 스틱 한쪽 끝에 백색계 납작한 원판이 달려 있는 치과용 연마제로 치과에서 사용하는 연마기에 장착해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이다. 치아우식증(충치) 치료를 위한 레진 수복 후 잉여 레진을 삭제, 연마하기 위해 사용한다. ‘치과위생용 제품류’에 해당하는 제3306.90-2000호로 신고했다.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된다.

하지만, 본 물품은 우식증을 치료하기 위해 레진을 수복 후 잉여 레진을 삭제, 연마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강 청결 및 질환 예방 등 위생을 위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제3306호에서 제외했다.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며

‘(II) 치과용 기기’로 다음과 같이

“(8) 치과용 버어(dental burr)·**치과용의 디스크**·드릴·브러시(치과용 드릴 엔진이나 치과용 핸드피스(handpiece)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치과의사나 치과기술자가 치과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기와 공구류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나이프; 압설자(壓舌子 : spatulae)·그 밖의 조형용 공구; 여러 가지 집게와 핀셋[클램프(clamp)와 치관의 고정용·피복절단용 등]; 튕; 전단기; 망치; 줄; 끌; 삭도; **연마공구**; 금속제 치관의 메탈포오머(metal formers)[비팅(beatting)에 의해서 제조용으로 사용한다]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백색계 원판상을 플라스틱제 스틱 한쪽 끝에 부착한 것으로서 핸드피스에 결합해 치아에 레진 수복 후 잉여 레진 삭제 및 연마용에 사용하는 치과용 연마제이므로 제 9018.49-800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PREPARATIONS FOR DENTAL HYGIENE	3306.90-2000 (C 6.5%)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dental use	9018.49-8000 (A 8%)

중세시대 사치품 ‘향신료’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콜럼버스가 목숨을 걸고 탐험에 나선 이유 중 하나는 안정적인 향신료 확보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향신료는 이국적인 향취를 풍길 뿐 아니라 희소성이 높아 실질적인 용도 이상으로 중세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쉽게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격도 비싸서 일반 대중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치품으로서의 매력이 있었던 것이다. 양념이 많이 첨가된 음식은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고 이에 따라 과다한 양념 사용은 맛을 좋게 하기보다 음식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됐다.

상류계급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인도제도에서 아라비아를 건너 수입된 값비싼 향신료들은 “후추처럼 비싸다”라는 프랑스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그들의 부유함과 권위를 보여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템이었다. 당시 향신료는 맛과 향을 가미하는 높은 부가가치의 미각식품인 것은 물론이고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기도 했다. 또한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향을 만드는 데도 사용됐고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였다.

최근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매콤달콤’한 맛의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 고추장도 이런 메뉴의 양념으로 쓰이고 있다고 미국 매체에 보도되고 있다. 관련 매체는 ‘맵달(Swicy·스위시) 아이템이 레스토랑 메뉴를 점령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올해 가장 ‘핫’한 식음료의 맵고 달콤한 맛이라고 소개했다. ‘스위시’는 맵다는 뜻의 스파이시(spicy)와 달콤하다는 뜻의 스위트(sweet)를 조합한 신조어라고 한다. 우리의 매콤한 라면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김밥 또한 불티나게 팔린다는데 여기에 질세라 향신료 또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관세율표에서 식물성 향신료 재료는 주로 제9류 ‘커피·차·마테·향신료(spices)’에 분류된다. 예컨대 후추(pepper)속의 것으로 ‘건조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는 제0904호에, 단 신선 또는 냉동의 것은 채소의 일종으로서 제7류에 분류된다. 바닐라(제0905호), 계피는 제0906호에, 생강은 제0910호에 각기 분류되는 것이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승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07호_2024.11.18.

최신개정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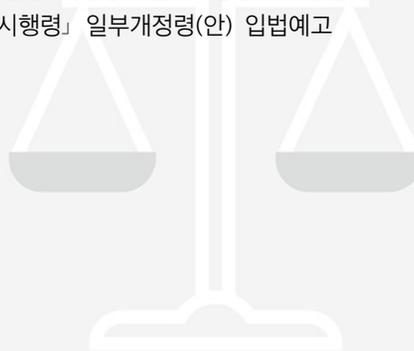
총리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총리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991호, 2024.11.15.)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및 국가표준시험실 지정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식에 시험·검사 대상 의료기기의 품목군 기입 방식을 정비하며,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받으려는 시험·검사 대상 분야 또는 품목에 위생용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지정서”를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원본”을 각각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서”를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서”를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지정서”를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서”를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지정서”를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서”를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지정서”를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시험·검사기관등에 대하여”를 “시험·검사기관등으로 하여금”으로, “현장 지도”를 “해당 시험·검사기관등에 대하여 현장 지도”로 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서류 검토 및”을 “서류를 검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발급대장의 제출을”을 “발급대장을 제출하도록”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중 “경우 그 시험·검사”를 “시험·검사”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 중 “별표 2 제6호다목”을 “별표 2 제7호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대표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대표자)	기관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소재지	한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영문		
대표자	한글	설립 연월일		
	영문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대표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대표자)	기관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소재지	한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영문	
		영문	
	대표자	한글	설립 연월일
영문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대표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대표자)	기관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소재지	한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영문	
		영문	
	대표자	한글	설립 연월일
영문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대표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대표자)	기관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소재지	한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영문	
		영문	
	대표자	한글	설립 연월일
영문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청내역란 중 대상 품목(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 품목	<p>※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군 중 5개 이상의 품목군을 적습니다.</p>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대표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대표자)	기관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소재지	한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영문	
		대표자	
	영문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의 신청인(대표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대표자)	기관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소재지	한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영문	
		대표자	
	영문		

별지 제6호서식 3쪽 중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Food and Drugs Act”를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Food and Drug Industry”로, “Commissioner of Regiona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Commissioner of the Regional Office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신청내역란 중 시험·검사 대상 분야 또는 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중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Food and Drugs Act”를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Food and Drug Industry”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첨부서류란 제6호 중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of Food and Drug”를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Food and Drug Industry”로 하고, 같은 쪽 국외시험·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첨부서류란 제2호 중 “the on Testing and Inspection of Food and Drugs Act”를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Food and Drug Industry”로 한다.

시험·검사 대상 분야 또는 품목 Product classification	[] 농·임산물 Agricultural · Forestry products	[] 수산물 Fishery products
	[] 축산물 Livestock products	[] 가공식품 Processed foods
	[] 건강기능식품 Health functional foods	
	[]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 기구 또는 용기·포장 Apparatus, container, package for food products	
	[] 위생용품 Cleansing and Hygiene products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Inspection of Food and Drug”를 “Inspection in the Food and Drug Industr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으로,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Food and Drugs Act”를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Food and Drug Industry”로, “Article 7(6)”을 “Article 7(7)”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Food and Drugs Act”를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Food and Drug Industry”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Food and Drugs Act”를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Food and Drug Industry”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2쪽 중 “the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of Food and Drugs”를 “Act on Testing and and Inspection in the Food and Drug Industry”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각각의 앞쪽의 신청인(대표자)란,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의 신청인(대표자)란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신청내역란 중 시험·검사 대상 분야 또는 품목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30으로 하고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 관세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46개 물품 중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onakim@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22호, 2024.5.14.)

2. 폐지 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고시를 통폐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2호, 2024. 5. 14.)를 폐지하고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로 통합

3. 시행일자(예정) : 2024. 00. 00.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문경환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문관(042-481-7873)
- 제출기한 : 2024. 11. 29.
- 제출방법 : 이메일(davidmoonkr@korea.kr, deawonbang@korea.kr) 또는 팩스(042-481-7879)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36호, 2024.8.14.)

2. 폐지 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고시를 통폐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36호, 2024.8.14.)를 폐지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

3. 시행일자(예정) : 2024. 00. 00.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문경환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문관(042-481-7873)
- 제출기한 : 2024. 10. 27.
- 제출방법 : 이메일(davidmoonkr@korea.kr, deawonbang@korea.kr) 또는 팩스(042-481-7879)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82호, 2021.12.31.)

2. 개정 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고시를 통합

3. 주요 개정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2호, 2024. 5. 14.)를 폐지하고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로 통합

구 성	내 용	조 문	조문 출처
제1장 총칙		제 1 조 ~ 제 2 조	현행 유지
제2장 과다환급 발생 우려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		제 3 조 ~ 제11조	현행 유지
제3장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 원재료의 환급 방법 조정<신설>		제12조 ~ 제15조	폐지 고시를 재배치
제4장 보칙		제16조	현행 유지

4. 시행일자(예정) : 2024. 11. 00.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문경환 사무관(042-481-7875), 김소현 주문관(042-481-7877)
- 제출기한 : 2024. 10. .
- 제출방법 : 이메일(davidmoonkr@korea.kr, ksh0115@korea.kr) 또는 팩스(042-481-7879)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훈령 제2024-18호, 2024. 4. 17.)

2. 개정 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고시를 통합

3. 주요 개정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36호, 2024. 8. 14.)를 폐지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

구 성	내 용	조 문	조문 출처
제1장 총칙		제 1 조 ~ 제 6 조	
제2장 환급신청 및 결정·지급절차		제 7 조 ~ 제28조	
제3장 간이정액환급		제29조 ~ 제39조	
제4장 평세증 및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 등		제40조 ~ 제60조	현행 유지
제5장 반입 또는 적재확인서 발급		제61조 ~ 제75조	
제6장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의 사용승인 및 환특세율		제76조 ~ 제80조	
제7장 <삭제>		제81조 ~ 제90조	
제8장 <삭제>		제91조 ~ 제97조	
제9장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신설>		제98조 ~ 제123조	폐지 고시를 재배치
제10장 보칙		제124조 ~ 제130조	현행 유지

4. 시행일자(예정) : 2024. 00. 00.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문경환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문관(042-481-7873)
- 제출기한 : 2024. 11. 29.
- 제출방법 : 이메일(davidmoonkr@korea.kr, deawonbang@korea.kr) 또는 팩스(042-481-7879)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27호, 2019.7.1.)

2. 개정 사유

- 관련 고시 통폐합에 따른 인용 고시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인용 고시 통폐합* 내용 반영(제10조)
 -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폐지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로 통합

4. 시행일자(예정) : 2024. 00. 00.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문경환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문관(042-481-7873)
- 제출기한 : 2024. 11. 29.
- 제출방법 : 이메일(davidmoonkr@korea.kr, deawonbang@korea.kr) 또는 팩스(042-481-7879)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67호, 2023.5.23.)

2. 개정 사유

- 관련 고시 통폐합 등에 따른 인용고시·조문 변경사항 반영 및 용어 통일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인용 고시 조문 통폐합* 및 명칭** 변경내용 반영(제1·2·3·9·18조)
 -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폐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
 - **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 관세행정 용어 변경 사항 반영(제3·16·19·27·30·32조)
 - * 기업심사 → 관세조사 / 종합심사 → 갱신심사 / 본부세관의 명칭 통일

4. 시행일자(예정) : 2024. 00. 00.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문경환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문관(042-481-7873)
- 제출기한 : 2024. 11. 29.
- 제출방법 : 이메일(davidmoonkr@korea.kr, deawonbang@korea.kr) 또는 팩스(042-481-7879)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694호, 2015. 3. 10.)

2. 개정 사유

- 관련 고시 통폐합에 따른 인용고시 변경사항 반영 및 직제 개편 내용을 반영해 업무수행 부서명칭을 현행화

3. 주요 개정내용

- 인용 고시 통폐합* 내용 반영(제17조(준용규정))
 -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폐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
- 세관별 선별기준 운영 부서를 그간의 직제개편(부서명칭 변경,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화(제5조(세관별선별기준의 운영))

4. 시행일자(예정) : 2024. 00. 00.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문경환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문관(042-481-7873)
- 제출기한 : 2024. 11. 29.
- 제출방법 : 이메일(davidmoonkr@korea.kr, deawonbang@korea.kr) 또는 팩스(042-481-7879)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4-6호, 2024.2.1.)

2. 개정 이유

-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별표 1) 및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임을 확인해야 하는 지역(별표 2)의 변경

3. 주요 내용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 [별표 1]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국경지역) : [별표 2]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시행일자 : 2024. 12. 00.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4. 11. 28.까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담당자 : 백종철 사무관(042-481-7968), 권영미 주문관(042-481-3234)
- 제출방법 : 이메일(kym626@korea.kr)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신청을 선주 뿐만 아니라 조선소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해외에서발주 받은 선박은 조선소가 직접 환경친화적 선박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식별된 개선사항을 반영함.

2. 주요 내용

가. 환경친화적 선박 기준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5조제2호 개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환경친화적 선박 기준 및 인증 기준으로 추가함.

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자에 조선소 추가(안 제6조 개정)

조선소가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친화적 선박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조선소가 외국 선주로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을 발주받아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환경친화적 선박기술 또는 기자재가 적용되었음을 직접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신설함.

라.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제도 개선(안 제9조 개정)

- 1) 환경친화적 선박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는 예비인증 시 제출한 설계도면 등 서류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건*충족 시 예비인증을 받은 것과 다르게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을 받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 2)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예비인증 신청 대상자를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로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는 모두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1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이메일) : leejy111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
- 전화 : 044-215-4461
- 전자우편 : bjgus@korea.kr
- 팩스 :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인 특혜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다자관세팀)
- 전화 : 044-215-4461
- 전자우편 : bjgus@korea.kr
- 팩스 :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함.

3. 입법효과

양허관세율표를 현행화하여 교역확대와 경제 진흥 도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다자관세팀)
- 전화 : 044-215-4461

- 전자우편 : bigus@korea.kr

- 팩스 : 044-215-807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2025년 1월 1일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일부 품목번호, 품명이 개정되어 시행되므로, 별표로 규정된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변경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협정관세율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4471,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23.9.7.)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필리핀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 내용

- ① '필리핀'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국가에 추가 (협정문 제3.2조1항 → 시행령 제24조1항에 반영)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여 상대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규정
- ②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신청 조사 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기간 20일 이상 보장 대상국가에 필리핀을 포함(협정문 제3.4조제2항 → 시행령 제24조12항에 반영)
 - * 잠정조치 신청내용 입수 방법, 증거 및 의견개진 가능 기간(20일 이상)을 관보에 게재
- ③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필리핀을 추가(협정문 제3.3조7항 → 시행령 제24조16항에 반영)
 -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 ④ 글로벌세이프가드 적용배제 대상 국가에 필리핀을 포함하며, 필리핀산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 (협정문 제3.6조1항 → 시행령 제24조의2에 반영)
 - * FTA체결국産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부 대상국가에 대해 글로벌세이프가드 적용을 재량적으로 배제할 수 있음 → “한-필리핀” 간에는 더욱 협력적인 관계 하에서 의무적으로 배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 전자우편 : butterfly@korea.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전화 (044) 203-5859, 팩스 (044) 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서비스

— 2024년 12월 오픈!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주간 관세무역정보 **고객의견 조사**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QR코드
스캔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설문조사 참여 시
스타벅스 기프트콘
을 드려요!!



설문대상

주간 관세무역정보
구독자



설문내용

주간 관세무역정보
고객 의견 설문



설문기간

2024. 11. 11. ~
2024. 11. 22.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